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. 6. 8 선고 2016가단1079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경로당

2. C

변론 종결 2017. 5. 25

판결 선고 2017. 6. 8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경로당은 경남 함안군 D 대 19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(1), (2), (3), (4), (5), (6), (1)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58.2㎡, 같은 도면 표시 (1), (6), (5), (7), (8), (1)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6.5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,

나. 피고 C는 위 가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

원고는 경남 함안군 D 대 194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의 소유자인바, 피고 B경로당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대차하여 건물을 신축·사용하고 있으나,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, 수익이 종료되었거나 사용,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로써 사용대차를 해지한다. 따라서 피고 B경로당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, 피고 B경로당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 C는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 B경로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, 6내지 28호증, 을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의 부친 E는 1980년경 F 개발위원장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한 사실, 이에 피고 B경로당은 1982년경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마을 회관으로 사용한 사실, 원고는 1981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곳에 1998년경 마을 회관, 2004년경 노인복지시설, 2014년경 복지회관이 건립된 사실, 피고 B경로당은 H생들의 동갑계 모임인 피고 C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임대하여 피고 C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,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 된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사용대차 목적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, 수익이 종료되었거나 사용,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,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 B경로당과의 사용대차를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.

피고 B경로당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부친 E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,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따라서 피고 B경로당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4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조미화